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9,979,974	16,199,399
일반회계	476,403,658	14,292,110
특별회계	63,576,316	1,907,289
공기업특별회계	24,328,493	729,85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328,493	729,855
기타특별회계	39,247,823	1,177,435
수질개선 특별회계	15,942,477	478,274
주택사업 특별회계	6,743,842	202,31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79,429	26,383
자활기금 특별회계	2,208,366	66,251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1,487,617	344,62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41,600	28,24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83,492	5,5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861,000	25,8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33,949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0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6,199,399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공무원 기준인건비
- (2)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
- (3) 공공요금, 체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 (4) 재해대책 및 복구비